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 11. 19.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시정홍보 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감 부여 및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 우리시 SNS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자문·토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방법을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 일정기간 시정 홍보 활동에 지속 참여하는 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증 발급 (안 제4조 제5항 신설)
- SNS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의·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위원회 실무형 위원 위촉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제2항)
-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제3항)
- SNS 자문위원회 존속기한 도래(2018.12.31.)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안 제5조의2 제8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조례로,
- 제4조 시민참여 보장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시정홍보 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자증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소속감부여 및 원활한 취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제5조의2 제2항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SNS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토의와 자문이 가능토록 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있어 존속기한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정책자문관을 구성·운영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
- 주기적인 자문활동,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민·관 협업과 협치 강화 도모 함.

2. 주요내용

- 정책자문관 설치 목적과 기능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정책자문관 위촉, 임기, 위촉해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정책자문관 회의 운영과 수당 등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환경의 다변화로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점점 심화되는 여건으로 민간영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접목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 정책자문관의 설치목적과 기능, 위촉, 임기, 위촉해제, 회의운영과 수당 등을 각조에 규정하여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바 존속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책자문관의 자문내용 및 검토의견, 자료요구 및 제출내용, 수당지급 내용 등 운영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개선 및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여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임.

1. 제안이유

- 2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 내실 있는 협치 추진 체계 구축 및 협치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협치, 시민, 협치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
- 협치의 기본원칙(안 제3조)
 -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이루어 짐.
 - 협치 참여자는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
 - 협치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
- 협치협의회의 설치(안 제7조)
 - 시장은 시민과의 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함.
 -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협의회의 심의 · 조정 기능(안 제8조)
 - 시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결정, 시행,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 시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민 정책 제안 및 협치사업에 관한 사항.
- 시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 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구성(안 제9조)

-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시장, 위촉직 회장),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 위촉직 위원은 시정과 협치 활동에 참여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공개모집, 동행정복지센터와 사회단체 등의 추천, 시의회 추천, 시장의 추천으로 위촉함.

○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의견 수렴 등(안 제13조)

- 협의회는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시민제안, 협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 자문, 토론회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시의 현안 중 별도의 시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시민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안 제15조)

- 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 사업 지원(안 제19조)

-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협치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과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협치백서 발간(안 제21조)

- 협치 활성화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안산시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인구감소, 실업, 다문화, 지역경제 등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행정과 함께 해결하는 협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1장 총칙에서는 기본원칙과 시민누구나 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협치 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내용들을 규정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민관 협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자문기관의 구성에서, “자문 기관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하여, 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본 조례안 제9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여 다소 과다한 인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수당 등 비용절감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현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운영 중인 일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협치 협의회 구성인원은 최소 25명 이내, 최대 40명 이내이며, 대부분 3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풍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배치 예정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3. 검토의견

- 풍·육도는 대부분으로부터 16km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상주인구 170여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70%가 노령인구이나 풍도 내 의료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가 불가한 상황임. 또한 관광객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기상변화에 따라 육지로 후송에 제약이 따르고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인이 상주하여 기본적인 진료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근거에 따라 설치하는 풍도보건진료소는 2016년 신설 계획 수립으로 2018년 4월 착공이후, 10월 준공되어 12월초 개소예정으로, 풍도 보건진료소에 배치 예정인 도서지역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맞게 제명, 용어 등을 정비한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시정의 철학을 반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들이 알기 쉽고, 시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도록 국(局)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
 - 안전행정국→행정안전국, 도시주택국→도시디자인국, 환경에너지교통국→환경교통국
- 민생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해 신성장전략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징수과를 신설함.(안 제7조)
 - 민생경제국 内 신성장전략과 및 징수과 편제
- 복지업무 확충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참여와 권리도모 등을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함.(안 제8조)
 - 노인장애인과 명칭 변경 및 장애인복지과 신설
- 시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 및 건강한 공중보건 업무 추진을 위해 단원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 단원보건소 内 건강증진과 편제

○ 기구조정 내용(요약)

- 4급 기구 조정(명칭변경7)

- 기획경제국 → 민생경제국(명칭변경)
- 복지문화국 → 문화복지국(명칭변경)
- 도시주택국 → 도시디자인국(명칭변경)
- 환경에너지교통국 → 환경교통국(명칭변경)
- 안전행정국 → 행정안전국(명칭변경)
- 대부해양관광본부 → 대부해양본부(명칭변경)
- 다문화지원본부 → 외국인주민지원본부(명칭변경)

- 5급 기구 조정(신설4, 국 재편6, 명칭변경10)

- 민생경제국 内 신성장전략과 신설
- 민생경제국 内 징수과 신설
- 문화복지국 内 장애인복지과 신설
- 단원보건소 内 건강증진과 신설
-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 정책기획관(부시장 직속, 명칭변경)
-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 → 민생경제국 관광과(국 재편)
- 안전행정국 체육진흥과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국 재편)
- 도시주택국 건설과 → 환경교통국 건설도로과(국 재편, 명칭변경)
- 환경에너지교통국 녹지과 → 도시디자인국 녹지과(국 재편)
- 환경에너지교통국 공원과 → 도시디자인국 공원과(국 재편)
- 복지문화국 세월호수습지원단 → 행정안전국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국 재편, 명칭변경)
- 지역경제과 → 상생경제과(명칭변경)
- 세정과 → 공정조세과(명칭변경)
-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과(명칭변경)
- 건축과 → 건축디자인과(명칭변경)
-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 →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명칭변경)
-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 →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명칭변경)
-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정책과 →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정책과(명칭변경)
-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지원과 →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과(명칭변경)
- U-정보센터 → 도시정보센터(명칭변경)
- 상록구 세무1과 → 상록구 세무과(명칭변경)

○ 소관사무 추가

- 관광과에 마이스산업 업무 추가
- 도시재생과에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업무 추가
- 건축디자인과에 도시경관 및 디자인 업무 추가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3에서 실·국의 수는 규정하고 있지만 과·담당관의 수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동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18년도 기준인건비와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지침에 따른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 조례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시 전체 과·담당관의 중감 없이 본청에 미래전략관, 마이스산업과, 도시디자인과와 상록구 세무2과를 폐지하고, 민생경제국내 신성장전략과 및 징수과를 문화복지국내 장애인복지과를 단원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됨.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2018년 기준인건비」 및 「2018년 하반기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른 국가시책, 지역현안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 수 : 2,048명 → 2,061명 (13명 증)
 - 집행기관 : 2,018명 → 2,031명 (13명 증)
 - 의회사무기구 : 30명 → 30명 (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 종류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	현 행	2,048	1	2,029	3	4	11
	개정안	2,061	1	2,040	3	6	11
증 감		+13	-	+11	-	+2	-

- 직급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 경 력 관	5급 상당	6급 상당 이 하		
정원	현 행	2,048	1	1	1	15	110	1,901	1	1	2	4
	개정안	2,061	1	1	1	15	110	1,912	1	1	2	6
증 감	+13	-	-	-	-	-	+11	-	-	-	+2	-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총액 조정” 및 “2018년 하반기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048명에서 2,061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종류별 정원은 일반직 11명, 연구직 2명을, 직급별 정원은 6급이하 11명, 연구직 2명을 증원하고 2018년도 안산시 기준 인건비 총액은 2017년도 총액 171,185,305천원 보다 17,550,344천원 증가한 188,735,649천원으로, 2018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인건비 상승률 3.0%를 적용한 소요인건비 추계의 합계가 17,550,344천원 범위 내에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어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서 및 부서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2)
 - 지역경제과 → 상생경제과, 세정과 → 공정조세과,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과,건축과 → 건축디자인과, 건설과 → 건설도로과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2)
 - 장애인복지과
- 대부해양본부로 이관되는 단위사무를 정비함.(안 별표2)
 - 대부도 지역(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의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징수, 도로점용 허가취소,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도로의 유지·관리, 노점상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대부해양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 위임에서 제외함.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조정된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서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과 신설부서 사항을 반영하고, 대부해양본부로 이관되는 도로업무에 대하여 구청장 위임에서 삭제하고 대부해양본부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정부합동지표평가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제개선과제 통보 시행.
※ 예산법무과-9917(2018.7.5.)호에 의거 추진
- 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전자정부 구현에 맞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인터넷 시스템의 개발·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시스템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안 제3조)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명칭변경 (안 제8조)
- 전자우편 ID의 상용 보편화로 보급이 무의미하여 공무원 및 지역주민등에 대한 전자민원 ID 보급부분을 삭제한다. (안 제14조, 제15조)

-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 유도하는 이용자참여 활성화 운영부분을 신설한다. (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전자정부 구현에 맞는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관계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전자우편 ID의 상용화·보편화 등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부분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 부분을 신설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임.

1. 제안이유

안산신길 업무시설용지 부지 매입

- 90블럭 매각에 따라 시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대두되며, 증가하는 미래 행정·복지·문화 수요에 적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신길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내 업무시설용지를 조성원가(민법상 이자 부담)로 매입하여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산신길 업무시설용지 부지 매입》

□ 사업개요

- 취득대상 : 1필지 766.8㎡ 단원구 신길동 1693번지(업무시설용지)
 - 2011. 12. 31. 택지개발 준공,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내 부지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업무시설)
 - 소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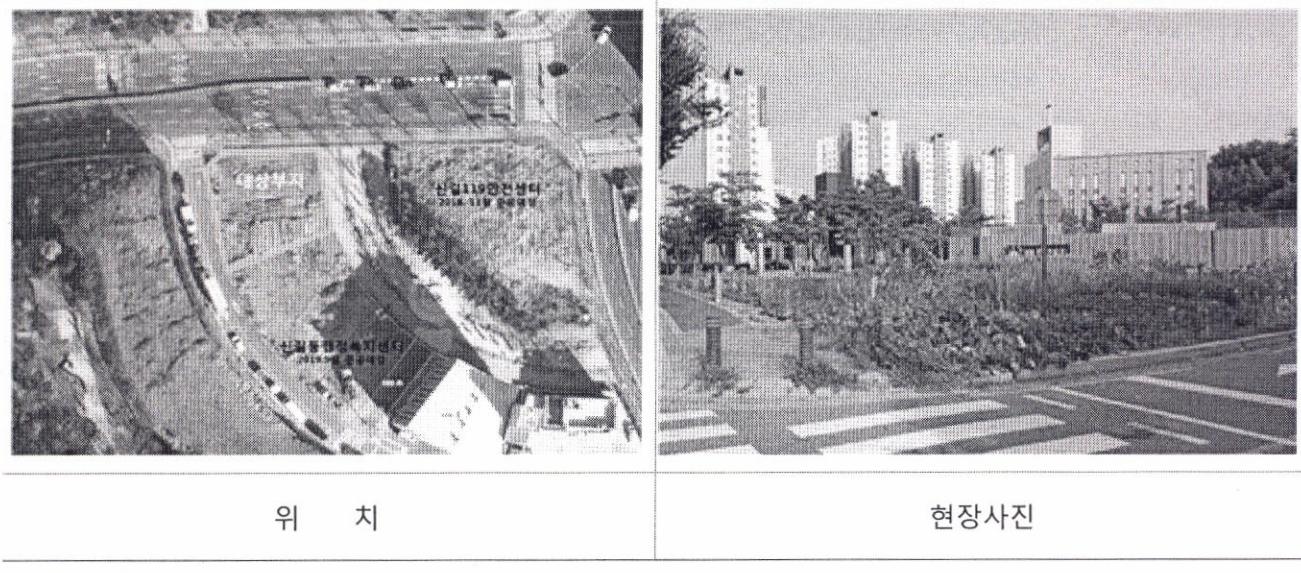
○ 매입예정금액 : 10억원(전액 시비)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민법상 이자(5%) 포함 공급금액
 공급금액 = 조성원가(원금) + 민법상이자
- 2019.1월 계약체결 시 : 987,593,140원 = 787,227,552원 + 200,365,588원
- 공시지가 1,318,896,000원 (개별공시지가 1,720,000/m²)

□ 필요성 및 활용방안

- 신길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업무시설용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미래의 행정, 문화 및 교육 수요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향후 행정 수요의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함.
- 2011.12.31. 택지개발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여, 2014년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민법상 이자(연 5%)를 가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2018년 공시지가 대비 33.54%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매입금액 유리함.
- 바로 인접하여 신길주민문화센터, 신길119안전센터가 신축 중이며, 안산 스마트허브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주변 지역 활성화 및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 있음.

□ 위치도 및 현황



□ 추진사항 및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6.11.14.
※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사업
-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 : 2018.10. 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8.10.31.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8.11.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자체사업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외
- 공유재산 취득 추진 : 2019. 1.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따라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증가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목적으로 활용 등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상 토지는 단원구 신길동 1693번지, 766.8m², 1필지로 신길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미래의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 바로 인접하여 주민문화센터, 119안전센터가 신축 중이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가 큰 부지로 예측되어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가.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안

- 장화운동장 내 유소년다목적실(클럽하우스)에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있어, 2층 증축을 통해 유소년 클럽하우스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함.

나. 동물보호센터 건립안

-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18. 10. 기준 관내 동물등록두수 20,500 두/등록대상두수 약 138,180두) 그에 따른 적합한 동물보호 및 복지 시설 필요성 대두
- 또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 우리시를 포함한 인근 4개 시(안산, 시흥, 안양, 광명)의 유기동물을 한 보호소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 및 보호소 관리의 어려움 야기
- 이에 시에서 직접 건립·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 수준의 선진화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물복지 실현

※ 2018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공모(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다. 중앙도서관 증축안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증축) 안은 안산시 총 83개(공공, 작은도서관)을 총괄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별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안산시 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공동체 소통 공간마련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임
- 향토자료실과 안산시 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조성으로 안산시 향토자료 수집 및 관내 도서관 자료의 수집 보존과 체계적인 장서 관리 체계 마련하여 안산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다양한 시민 계층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 조성으로 시민들의 독서·문화·공동체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쾌적한 독서 및 열람환경 조성으로 시민 독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안

□ 사업개요

- 사업명 :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 공사
- 위치 : 상록구 선진안길 80-5 (사동 1502-1)
- 사업기간 : 2018. 10. ~ 2019. 12.
-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300, 시비 300)
 - ※ 특별조정교부금 300백만원 교부 [예산법무과-15029호(2018.10.5.)]
 - ※ 2018년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189,037,448원

- 세부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구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600	29	560	7.5	3.5

- 사업내용 : 2층 철골조 증축 325㎡

○ 기존 건물현황

-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359.25㎡
- 주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실, 운동치료실 등)

○ 증축 내용

- 면 적 : 2층 증축 325㎡
- 구 조 : 철골조
- 주요시설 : 구내식당, 숙소, 기타 부대시설 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 추진 계획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12.
- 행정절차 이행 : 2019. 1.~3.
 -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 공용건축물 협의
-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비 300백만원) : 2019. 3.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9. 3.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 2019. 4.
- 공사 발주 : 2019. 5.
- 공사 착공 : 2019. 5.
- 공사 준공 : 2019. 12.

나. 동물보호센터 건립안

□ 사업개요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37-105외 5필지
- 건축연면적 : 1,250m² (주차장 및 놀이공간 제외)
- 사업 기간 : 2018. 10. ~ 2020. 7.
- 주요시설 및 규모

구 분	용 도		연면적(m ²)
보호동	계	지상 3층	990
	1층	개 보호실, 입소대기실, 미용실, 창고 등	330
	2층	고양이 보호실, 진료실, 수술실, 격리실 등	330
	3층	훈련실, 교육실 등	330
사무실	계	지상 2층	260
	별관(1,2층)	사무실, 당직실, 휴게공간, 화장실 등	260
실외	주차장, 놀이공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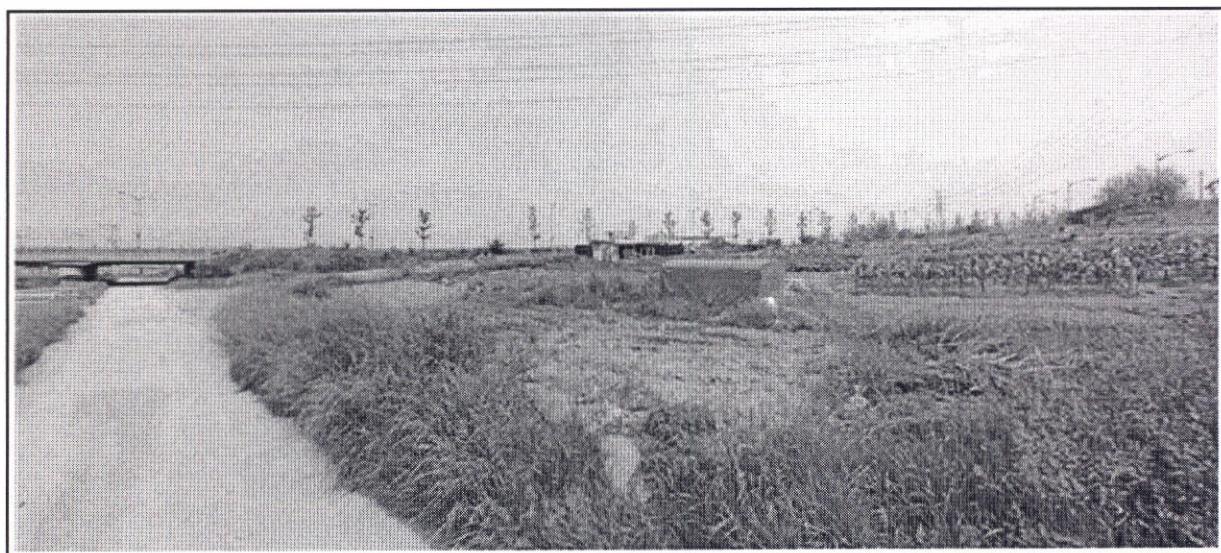
- 사업비 : 2,500백만원(국비 600, 도비 210, 시비 1,690)

구 분	산출기초		금액(억원)
총 계			25.00
공 사 비	소 계		23.98
	건축공사	1,250m ² × 1,200천원 = 1,500백만원	15.00
	기계공사	1,250m ² × 139천원 = 174백만원	1.70
	전기공사	1,250m ² × 120천원 = 150백만원	1.50
	통신공사	1,250m ² × 80천원 = 100백만원	1.00
	소방공사	1,250m ² × 79천원 = 99백만원	1.00
	토목·조경공사	1,250m ² × 200천원 = 250백만원	2.50
용 역 비	기타	기타 동물병원 시설자재비용 등	1.28
	소 계		1.02
	기본설계비	2,400백만원 ÷ 1.1 × 1.57% = 34백만원	0.34
	실시설계비	2,400백만원 ÷ 1.1 × 3.15% = 68백만원	0.68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추진사항 및 계획

- 동물보호센터 건립 검토 보고 : 2017. 9.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 2017. 9.
- 공모사업 평가 및 확정 : 2017.10. ~ 11.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취득심의 : 2018. 2. 9.
- 추경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임위 부결 : 2018. 3. 21.
- 건립예정 부지 재조사 및 토지 매입 협의 : 2018. 4. ~ 9.
- 건립기본계획 방침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 2018. 10.
- 예정부지 중 사유지 매입(교환) 실시 : 2019. 3.
- 설계용역 및 각종 인허가 추진 : 2019. 3. ~ 9.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9. 10. ~ 2020. 6.
- 동물보호센터 운영 : 2020. 7. ~

*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

구분	당초	변경
대지위치	상록구 일동 715번지	신길동 1037-105 외5필지
대지면적	3,344.2m ²	2,324m ²
변경사유	인근 주민 집단 민원 발생 및 보전녹지지역으로 동물병원 용도로 건축 불가	대지 위치가 도로로 둘러싸여 주거 지역과 차단 되어 있어 민원소지가 없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동물병원 용도로 건축 가능

다. 중앙도서관 증축안

□ 사업개요

- 위치 : 단원구 안산천남로 14(중앙도서관 부지 내)
- 사업기간 : 2018. 9. ~ 2020. 12.

○ 사업비 : 1,995백만원(도비: 500, 시비: 1,495)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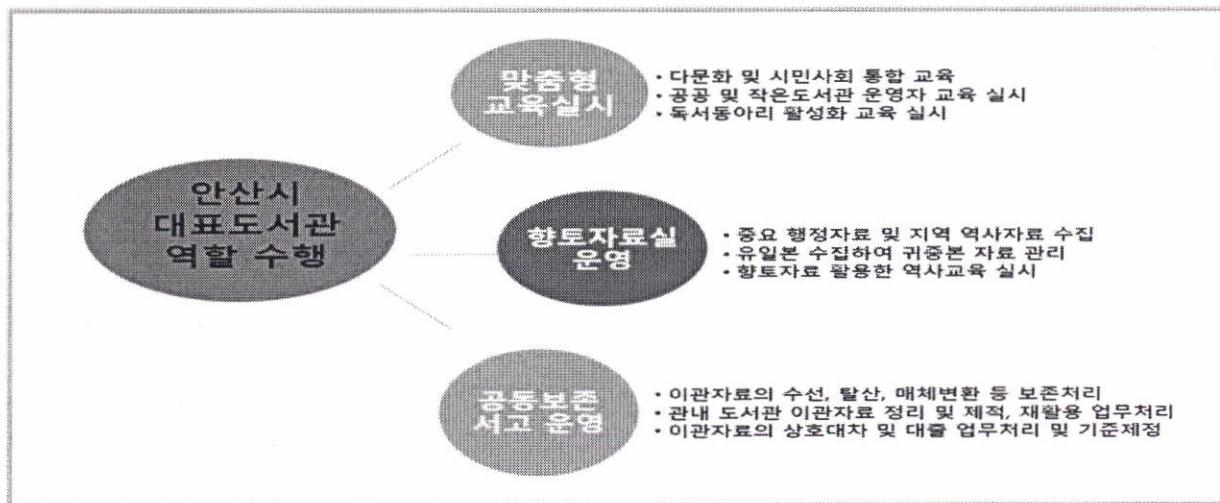
구 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 설 부대비	보존서고 리모델링
사업비	1,995	1,452	60	17	4	462

○ 건축연면적 : 1,580.8㎡(증축 660㎡, 리모델링 920.8㎡)

○ 주요시설

구 분	용 도	면적 (㎡)
증축	1층 정책협의실, 세미나실, 북스타트실	220
	2층 향토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전시실	220
	3층 매점, 북카페	220
리모델링	중앙도서관 지하1층 안산시 공동보존서고로 리모델링 (40만권 소장 규모)	920.8 (전기실, 창고 제외 면적)

○ 운영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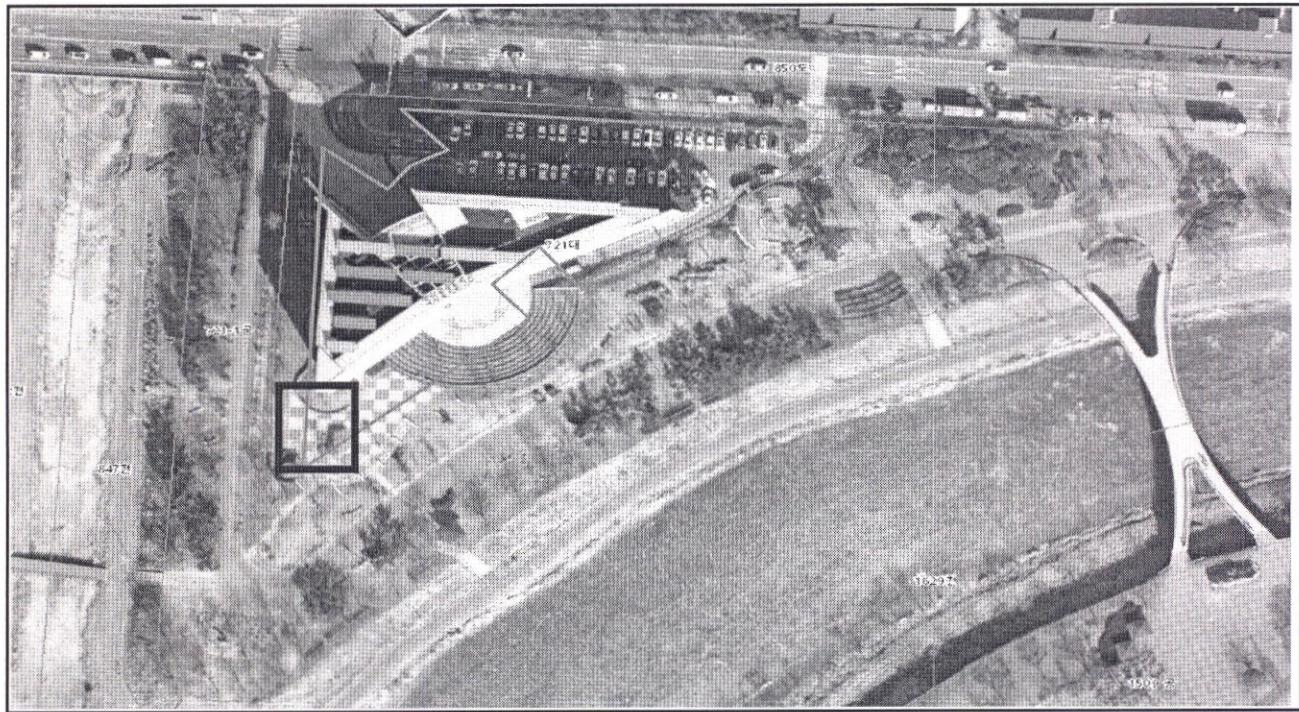


□ 추진사항 및 계획

- '18. 09.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증축) 계획 수립
- '18. 10. :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 반영
- '18. 11.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 '18.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19. 0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9. 05.~'20. 12. :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

- 증축 위치도



3. 검토의견

가.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안

- 상록구 선진안길 80-5(사동 1502-1)에 위치한 장화운동장 내 유소년 다목적실(클럽하우스)에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2층 증축을 통해 유소년 클럽하우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유소년다목적실은 건축당시부터 2~3층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 되었으며, 실시설계 시 별도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증축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 하고, 증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정 이내로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체육시설, 용도지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거 체육시설 편익

시설로 구내식당, 숙소 설치가능 지역임.

- 또한 건물 증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장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운동시설은 시설면적 100m²당 1대로, 법정주차 대수 12대가 필요하나 부지 내 부설주차장은 32대로 법정대수를 초과함에 따라 구조검토, 건축법, 용도, 주차장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 유소년 다목적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동물보호센터 건립안

- 2018. 10.월 기준 우리시 등록동물 대상두수는 약138,180두 중 등록 두수는 20,500두로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동물 보호 및 복지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곡동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 우리시를 포함한 인근 4개시의 유기동물을 현 민간보호소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당초 상록구 일동 715번지에 건립 운영코자 하였으나, 건립예정지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과 보전녹지에서는 동물보호센터 필수 요건인 동물병원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어, 민가와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소지가 없고, 동물병원 용도로 건축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인 단원구 신길동 1037-105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17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 원 중 금년도에 국비 6억 원, 도비 2억1천만 원이 확보된 사업

으로 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물보호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유기동물사체 발생 처리 등으로 반대 민원이 있는 사업인 만큼 주택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다양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건립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다. 중앙도서관 증축안

- 중앙도서관은 안산시 관내 총83개 도서관의 대표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의 지역커뮤니티 공간 및 이용자 편의 시설의 부족과 공동 보존서고 공간의 부족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 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안산시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지역공동체 통합교육 실시 공간 확보 및 향토자료 제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공동 보존서고 운영으로 관내 각 도서관 자료실의 적정서가 상태유지와 장서관리 효율성 증대 및 감골, 성포, 관산도서관의 기존 보존서고 공간을 도서관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쾌적한 독서·열람 공간 조성으로 시민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중앙도서관은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이 예상 되니 건물 증축 시 주차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된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조정이 필요.
-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하여 조례규정에서 내용 삭제

2. 주요내용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 무료 발급 「지방세 징수법」 개정
(안 별표1의 (증명)연번 4란)
- 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 제조업 6종에 대한 신고 수수료에 관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7년 제정 및 2018. 4.19. 시행으로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
(안 별표1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연번 4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의 국민 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정비대상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제각각 규정된 지방세 납

세증명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9”의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2017년 제정되어 2018. 4. 1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이유

-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조정함(안 제3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7조의3)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2018.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조의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 감면 및 제7조의3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 12. 31.에서 2020. 12. 31.까지 2년 연장하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률을 2016. 12. 31.까지는 100분의 75, 2018. 12. 31.까지는 100분의 50을 기한 없이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